2017-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2017. 10. 12. 공고

2017-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 10. 12.) 현재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대학생(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를 포함)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17.10.12.(목)	•	'17.11.7.(화) ~ 11.10.(금)	'17.11.17.(금)	'17.11.27.(월) ~ 11.29.(수)	'18. 2.14.(수)	•	'18. 2. 26.(월) ~ 2.28.(수)

※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공급개요

■ 공급 위치 및 규모

공급위치	공급규모	입주 시기	거주 형태	공급 인원	건물형태 (층수)	난방 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2018.3.	공동거주	148명	계단식	개별
하월곡동 21-2	74호(1호 2실)	예정	(1호 2실)		(5층)	난방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주택	신청	신청자격별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실별 평균
유형	유형	신청자격	주택형	동별	인원	실면적 (㎡)	계	계약금 (10%)	잔금 (90%)	8년 임대료 (천원)
다가구 매입임대 (성북구)	29	대학생-남학생	29A	101	8	9.9~ 10.5			900	133.4
		대학생-여학생	29B	105	8		1,000	100		

	44	대학생-남학생 취업준비생-남학생	44A	101, 102, 107	40	8.1~ 11.2	1,000	100	900	176.2
		대학생-여학생 취업준비생-여학생	44B	103~ 106	60	11.2				
	50	대학생-남학생 취업준비생-남학생	53A	101, 102	12	10.2~	4 000	400	0.00	
	53	대학생-여학생 취업준비생-여학생	53B	103~ 106	20	19.4	1,000	100	900	216.8
합계				148						

- ※ 실면적은 각 방 면적이며 호 전용면적이 아닙니다.(거실,주방,화장실 등을 제외하고 학생 1인이 개인별로 거주하는 방 면적입니다.)
- ※ 실(방) 면적 및 실별 평균임대료는 준공 전 기준자료로 준공시 면적 증감 및 개별요인에 따라 입주시 월임대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 10. 12.) 현재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특별자치시・ 광역시 포함)・군 지역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소재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2018년 1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학생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 10. 12.)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전국)
- 1인 1주택(실)만 신청가능하며, 1인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기혼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대학생

• 2017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는 대학생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군 지역 출신 인정 기준 - 대학생의 경우

○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후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 한함.)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대학생의 대학 인정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u>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사내대학,</u> 학점은행제 대학,대학원,대학원대학은 제외

● 취업준비생

• 2017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취업준비생의 졸업, 중퇴학교 인정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 ※ 사내대학,학점은행제 대학,대학원,대학원대학,해외대학은 제외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제55조의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
-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입주자 선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0. 12.) 현재 부모의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신청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 위	자격 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해당 세대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세대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70%이하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총자산 합산 16,70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2017년 공공주택 입주자 총자산・자동차기준 - 통계청 발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50%이하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의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은 100%이하) - 총자산 합산 16,70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2017년 공공주택 입주자 총자산・자동차기준 - 통계청 발표) ※ 경쟁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항목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 선정.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 3점 ② 가구원 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5인 이상: 3점, 3인 이상 4인 이하: 2점 • 3인 미만: 1점
 - ▶ 1순위 및 제2순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이하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의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은 150%)
 - 총자산 합산 16,70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2017년 공공주택 입주자 총자산・자동차기준 통계청 발표)
 - ※ 경쟁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하며, <u>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항목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u> <u>입주자 선정</u>
 -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 3점
 - ② 소득(신청자 또는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신청자의 세대 분리된 부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장애기정의 경우 120%이하): 3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장애가정의 경우 150%이하): 1점
 - ③ 가구원 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 5인 이상: 3점, · 3인 이상 4인 이하: 2점
 - 3인 미만: 1점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서

동일 순위	입주자 선정 순서
1순위	순위 → 추첨
2순위,3순위	순위 → 배점 합산 점수 → 각 항목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 세대주 및 세대원 기준

-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임. 다만, 성년자인 단독세대주(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는 세대주로 봄.
- 세대워

3순위

- 가.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태아(본인의 모가 임신중인 경우)인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님.
 - ※세대주의 형제자매,며느리,사위,시부,시모,장인,친척,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이 아님.

◆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 기준: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후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 한함.)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 10. 12.)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 결과에 의하여 전년도(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2017년 공공주택 입주자 총자산·자동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 및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0. 12.)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인한 보유자산 및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자산 및 소득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 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년도(201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통계청 발표)

(금액단위: 원)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2,442,224이하	2,815,137이하	2,815,137이하	2,976,334이하	3,154,370이하	3,332,407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419,113이하	3,941,192이하	3,941,192이하	4.166.867이하	4,416,118이하	4,665,369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4,884,448이하	5,630,275이하	5,630,275이하	5,952,668이하	6,308,741이하	6,664,814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861,337이하	6,756,330이하	6,756,330이하	7,143,201이하	7,570,489이하	7,997,776이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7,326,672이하	8,445,412이하	8,445,412이하	8,929,002이하	9,463,111이하	9,997,221이하

- 통계청 발표에 의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인가구 소득기준액은 4인 가구 소득기준액을 적용함
- 총자산: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함.
 - 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격 중 해당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구	분	총자산 기준
총 자 산	부 동 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 동 차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u>자동차가액 기준(2,522만원 이하)을</u> 충족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금 융 자 산

일

반

자

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 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은 붙임 참조

◆ 무주택 여부(경쟁시)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상기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의 범위 :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u>※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u> 가액에 포함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 6 -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 2006.5.8 이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무허가건물확인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접수 안내

■ 신청접수

3	구분	안내
신청일시		2017. 11. 7.(화)~2017. 11. 10.(금), 10:00~17:00
청약 방법	인터넷 청약	 ○ 청약방법: 인터넷 청약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가정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인터넷청약은 청약 첫날 2017. 11. 7.(화)~2017. 11. 10.(금), 10:00~17:00까지임. 다만.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인터넷 대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우측)인터넷청약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 (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5단 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공인인증서 인증확인)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자격요건: 월평균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 수급자 증명서(경쟁시 무주택여부, 가구원수, 소득 등)] 서류심사 시 신청자격 결격처리(배점 차감)되오니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인터넷 청약	 방문 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받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문인터넷 신청 대상자: 공인인증서가 없는 신청자,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 항문 인터넷 신청 대상자: 공인인증서가 없는 신청자,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 항문 인터넷 신청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 항문 인터넷 신청기간: 2017. 11. 7.(화)~2017. 11. 10(금), 10:00~17:00 청약방법: 공사예 설치된 컴퓨터는 사전에 공사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여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공급신청 위임장을 작성(청약을 위임)할 경우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 (장시간 소요 예상됨)할 예정입니다. 청약시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위조된 경우, 서류 미제출인 경우 신청 접수 불가. ※ 청약시 제출서류 본인신청시 : 신분증 의계가족(법정대리인) 신청시 ① 직계가족(법정대리인) 신청시 ① 직계가족(법정대리인) 신청시 ① 직계가족(법정대리인) 전우 기본증명서 1통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법정대리인 확인 불가시(법정대리인 지정 판결문) 제3자 신청시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 1통 ② 신청자의 신분증 ※ 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1통 ③ 신청자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 1통 ② 신청자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 1통 ③ 신청자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 1통 ③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④ 세경자 대리인의 신분증

4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발표일시: 2017. 11. 17.(금) 17:00 ○ 조회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공고 및 공지 ※ 공사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당첨자/서류심사대상자조회하기 및 ARS조회(1600-3456) 가능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시 기재한 사항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신청순위 및 배점 순서대로 3배수 내외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 동일 순위 경쟁시 상기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참조
심사서류 재출기간	○ 2017. 11. 27.(월)~2017. 11. 29.(수)
심사서류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별도의 연락 없이 탈락되므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완서류 제출요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예정입니다.
심사서류 재출방법	○ 제출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17. 11. 29.(수) 소인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담당자앞"

5

심사서류 제출 안내

※ 모든 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2017. 10. 12.) 이후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것)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후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 한함.)] 제출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제출. ·국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부모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처: 외교부(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5조)]로 대체 제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출. 	주민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부 또는 모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발급.○ 신청자 부모의 이혼 시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기준 제출	

뒷자리 표기된 것)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말소자초본 등 추가 제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부모 이혼시 에 한해 제출.(상세 표시)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본인의 모가 임신중인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 불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의 심사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기재 후 서명. - 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후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 한함.	서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별도 각서(공사 소정양식)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서류심사용)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의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분양권,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 하여 제출.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 		이지

○ 입주자격 검증

- ·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경쟁시 무주택 여부 포함)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 신청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후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 한함)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3순위 신청자가 무주택 여부 배점 항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 제공 동의서'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상기 세대원 기준 참조) 전원 모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소득 및 자산보유(경쟁시 무주택여부 포함.) 전산검색결과(경쟁시 무주택이 아닌 경우 배점만 차감)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7. 1.20)에 따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를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또는 입주자선정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

신청자격 또는 입주자선정 자격	제출서류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 다음 학기에 제출하고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졸업자의 7○ 중퇴자의 7○ 2017년 졸약○ 검정고시 학○ 건강보험자공고일 현지	해당 학교 · 사도 교육청 ·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자격	해당자격 입증서류		
	수급자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본인의 수급자증명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주민센터	
입주자선정 자격요건별 (해당자만)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 증명서		
	아동복지 시설퇴소자	시설퇴거 증명서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이동복지 시설의 장 및 해당구청	
	장애인가구	· 장애인 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해당구청· 주민센터	
	차상위 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붙임] 소득·자산 산정방법

-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 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 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 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 지방세정 자료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 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 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부채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	통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6 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시 2회에 한해 갱신계약 가능, 6년 거주)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대학생의 경우 졸업(중퇴)하거나 취업준비생이 취업한 경우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 가능.
- 대학생 입주자가 거주기간 중 취업준비생의 자격을(졸업 또는 중퇴) 갖춘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이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새로이 적용하나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 6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해당주택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주택을 다시 신청 가능하며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 6년을 초과 할 수 없음.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시에도 유지하여야 함.
- 취업준비생이 취업한 경우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 가능하나 갱신 계약을 할 수 없음.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을 할 수 없음.
- 대학생 입주자가 거주기간 중 취업준비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졸업 또는 중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이 계약하는 경우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확인 후 적격일 경우에 한하여 갱신 계약 가능.
- 입주자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 관계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갱신 계약 가능.(별도 개별 통보)

중복입주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신청자 외의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7 |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신청유형별로 주택형, 동별만 남, 여를 구분하고 층별, 향별은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계약취소 또는 미계약자, 계약 후 미입주한 자가 있으면 부적격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함. ※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2019. 2. 13.)까지 입니다.

■ 당첨자 발표

- 일자: 2018. 2. 14.(수)
-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확인방법
 - · 인터넷: 공사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당첨자/서류심사대상자조회하기 · 전화(ARS)조회: ☎1600-3456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8 계약 및 입주안내

계약체결		: 2018. 2. 26.(월)~2018. 2. 28.(수) 10:00~17:00 ⁴ 비서류(아래) 지참후 방문계약
	서울주택.	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연결)
계약시 구비서류	본인계약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위조방지처리된 신운전면허증만 가능) ③ 신청자 도장(본인 내방시 서명가능) ④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 각서(공사 소정양식)
	대리인계약	 ▷ 직계가족인 경우 :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 인감도장 +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입주	2018. 3월 예정(별도 통보)	

9 신청시 유의사항

- 1인 1주택(실)만 신청가능하며, 1인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모의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이 주택의 입주자격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갱신계약시에도 유지하여야 함.
 자산보유 및 소득금액 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추과로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은 사회보장정보
- 자산보유 및 소득금액 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초과로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해당자료 제공기관(위 표의 "소득자료 출처"참조) 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반드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기간(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청약자격(신청자격, 입주자 선정 자격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여 적격(정당) 당첨자로 확인된 후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한 내용과 제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소명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를 확인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심사서류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후 제출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계약안내 제출하여야 합니다.(관할 주거복지단의 해당센터에서 신청가능)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지정기간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함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대출한 경우 상환하여야 입주가능하며, 별도의 기금 대출이 불가함.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신청자)이 있을 경우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 함.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기타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합니다.(예비입주자 공급 일정은 개별 통보)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지인(친구,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행할 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전자 팸플릿에 삽입된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 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현장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침」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임대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공사게시판, ARS 조회(1600-3456)
- 금회 공급주택은 현장 여건상 견본주택은 공개하지 않으며, 전자팸플릿(홈페이지: www.i-sh.co.kr > 주거복지 > 임대주택공급 > 전자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2. **5H** 서울주택도시공사